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등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4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644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 정비(안 제5조)	2
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 정비(안 제13조)	12
다.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안 제15조)	17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644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3. 검토의견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 정비(안 제5조)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의 사업에서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를 삭제하고,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과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u> , <u>정밀안전점검</u>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2. ----- -----정밀안전점검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u><신설></u>	8.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
<u>7.·8.</u> (생략)	9.·10.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현행법 제5조¹⁾는 관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원으로 하여금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④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관리원의 업무 중 ‘시설물관리 계획의 검토’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

1)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 비교 】

현행	개정안	비고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u>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u>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삭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 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현행과 같음)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신설
<신 설>	8.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 신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현행과 같음)	

(1)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삭제(안 제5조제2호)

‘시설물관리계획²⁾의 검토’는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8.1.18.부터 2020.12.9.까지 (舊)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로 규정³⁾되어 있던 것으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5호, 2017.1.17. 전부개정, 2018.1.18. 시행)

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8.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전부개정, 2018.1.18. 시행)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법 제49조제7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수립 지원
2. 안전점검등지침,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및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의 작성 지원
3.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4.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원
6.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발간
7. 시설물 관련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재난 방지 기술에 관한 연구
8. 지진 재난 등 시설물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과 통계의 생산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舊)한국시설안전공단과 (舊)한국건설관리공사를 관리원으로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을 제정⁴⁾하던 당시, 종전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舊)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업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이관하면서 관리원의 사업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업무가 (舊)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관리원의 사업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 간에 차이가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를 관리원의 사업에서 삭제하는 경우 관리원의 사업 관련 법률 규정과 업무 수행 현황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8항⁵⁾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4) 「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7447호, 2020.6.9. 제정, 2020.12.10. 시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조6)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원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원에 의뢰하는 사례가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업무 수행 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리원에 의뢰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필요시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리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조(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신설(안 제5조제7호 신설)

안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을 관리원의 사업으로 신설하고 있음.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원은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모니터링 통합관리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방글라데시 도로청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사업, 필리핀 해상교량 스마트 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사업 등을 수행·개발·발굴하고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 수행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현황 】

구분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비고 (총사업비)
완료	①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	KOICA	‘14.12.-‘16.12.	주관 (20.7억)
	②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모니터링 통합관리	국토교통부	‘19.07.-‘23.10.	주관 (45.1억)
	③ 베트남 광남성 노후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국토교통부	‘21.07.-‘25.08.	참여 (47.5억)
수행	④ 방글라데시 도로청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KOICA	‘24.10.-‘28.09.	참여 (114억)
개발 (진행중)	⑤ 필리핀 해상교량 스마트 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국토교통부	‘26.05-‘30.04	주관 (52.0억)
	⑥ 베트남 도로교량의 시가반 스마트유지관리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27.05-‘31.04	참여 (110억)
	⑦ 페루 리마·까야오 교통인프라 스마트 안전관리	KOICA	‘27-‘30	참여 (60억)
	⑧ 우즈베키스탄 국가시설 유지관리체계 역량강화	미정	‘28.-‘30.	-
발굴 (지연중)	⑨ 인니 특수교 통합관리시스템 확장사업	EDCF	‘28년 이후	타당성조사, 사업제안 완료
	⑩ 인니 특수교 재난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KOICA IBS	‘28년 이후 (‘25년 탈락)	참여 (36억)
	⑪ 에콰도르 국도상 도로시설물 통합유지관리	KOICA	‘28년 이후 (‘25년 발굴 취소)	참여 (92억)

구분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비고 (총사업비)
	⑫ 캄보디아 하천횡단교량 통합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	‘28년 이후 (‘25년 발굴 취소)	참여 (40억)
	⑬ 페루 리마시 도로시설 스마트 재난대응	KOICA	‘28년 이후 (‘24년 탈락)	참여 (120억)
	⑭ 인니 국토비탈면 재난관리 통합모니터링	미정	‘28년 이후	수원기관 사업제안
	⑮ 베트남 광남성 도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미정	‘28년 이후	성 건설국 MOU 체결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 (민간 해외진출 지원) ODA사업 동반진출 및 기업 기술홍보, 마케팅
 - (민간매출) ‘14년 이후 총 7개 기업 58.5억원 해외 매출에 기여
 - (기술홍보) ODA사업 초청연수 활용 163개 기업 기술마케팅 수행
- (소통 및 협력체계) 민간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협력체계 운영 중
 - (민간) 민간 34개 기업과 안전산업 해외진출협의체* 구축 (‘21년)
 - * 협의체 소통을 통한 동반진출 전략 수립, 연 3회 간담회 및 기술마케팅 등
 - (공공)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공공기관 협의체* 구축 (‘25년)
 - *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 패키지형 ODA발굴, 민간진출 확대
- (수행조직) 국토안전기술연구원-기후대응연구실-글로벌사업팀(정원5명)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관리원에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조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에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원의 사업 관련 법률 규정과 업무 수행 현황 간에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관리원이 현재 국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업 확장을 반영하여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 신설(안 제5조제8호 신설)

안 제8호는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관리원의 사업으로 신설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사업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한국도로공사법」(①신·재생에너지 설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②유료도로의 효율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한국수자원공사법」(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⁷⁾가 있음.

7)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같이 관리원으로 하여금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안전과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 또한 현행법의 목적⁸⁾ 규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관리원의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설비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8)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 정비(안 제13조)

개정안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 확보’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u>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u>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리원의 채권 발행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현행법 제8조(자금의 조달)와 제13조(채권의 발행)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8조⁹⁾는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식으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과 함께 ‘제13조에 따른

9)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3조¹⁰⁾는 관리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들을 비교하면, 채권 발행의 목적을 각각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현행법 제8조)과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현행법 제13조)로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및 개정안 제5조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5조제7호·제8호¹¹⁾와 개정안 제5조제8호¹²⁾는 '건설

10)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 확보'라는 현행법 제13조의 채권 발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행법 제8조에 따른 자금 조달 방식 중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2조¹³⁾를 살펴보면, 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입과 채권 발행 사이에도 자금 조달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

-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12) 개정안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8.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

13)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 확보’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으로 개정하는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원의 전체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차입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목적에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¹⁴⁾ 「국가철도공단법」,¹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¹⁶⁾ 등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각각 공사 또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관리원의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

14)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6)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8조(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의 요건을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안 제15조)

개정안은 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국유재산 및 물품: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현행	개정안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 제15조¹⁷⁾는 국가로 하여금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17)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①국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및 물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를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로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인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매각 특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대부 시 영구시설물 축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매입 시 대금 분할납부 등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원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특례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국공유재산 특례 규정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유재산 및 물품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신 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¹⁸⁾¹⁹⁾ 「국방과학연구소법」²⁰⁾²¹⁾ 등이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관리원 또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증센터 등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 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21)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²²⁾

이에 개정안은 관리원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사용허가·대부·매각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리원의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등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 관련 연구·실증 시설 등 설치와 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보임.

다만,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제2호²³⁾는 국가가 공공기관 등의

22)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진주시에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실증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의 50%가 감면될 수 있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23)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관리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허가가 동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관련 원칙과 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들과 유사하게 관리원에도 해당 특례를 부여해야 할 특수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